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증심사 유형 다양화 및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한 조사 등〉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97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인증심사 유형 다양화에 따른 KS 인증제도 정비 필요성	2
2.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한 조사·제재체계 마련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1.
3. 회부연월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등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으로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심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범위 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는 등의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등).

Ⅲ. 검토의견

1. 인증심사 유형 다양화에 따른 KS 인증제도 정비

개정안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사항에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KS 인증 취득 대상을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 외에 설계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한편(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인증 신청자의 시료 제출의무 및 인증 결과 통지 대상을 정비하며, 인증심사의 유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인증심사 유형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일정한 인증 유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심사의 적용 대상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7조 및 제19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생략)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② -----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 4. (생략)

<신설>

6. (생략)

③ ~ ⑤ (생략)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

-----제
조, 설계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증심사) ① -----

-----인증심사의 유형
에 따라 그 제품-----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증을 신청한
자-----

-----.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u>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u>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u>인증심사의 방법·절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u>인증</u>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략)	④ ----- ----- -----<u>인증을 신청한 자</u>----- -----, ----- ----- ----- -----. ⑤ <u>인증심사의 유형·방법</u>----- ----- -----, 이 경우 인증심사의 유형을 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 -----<u>인증</u>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 중 <u>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u>는-----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¹⁾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및 제품인증 품목 지정 등에 관한

1)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6.>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제조 중심의 전통적 산업구조 외에도 설계²⁾·설치·운영³⁾ 등 서비스와 융합된 형태의 산업활동이 확대되고, 제품의 품질 확보 방식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KS 인증제도는 제조자 및 공장 중심의 인증심사 체계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어 설계·설치·운영 중심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취득이 곤란하고, 산업별·기술별 특성이나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인증심사 유형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제조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심 설계·기술에 대한 품질 확보가 가능한 분야
예시) 로봇 설계기업, 반도체 펌리스 등 설계·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

3) 설치 상태, 유지관리 체계, 안전관리 프로세스 등이 제품 품질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
예시) 풍력터빈, 태양열온수기 등(설치 이후 운영·유지관리 상태까지 포함되어야 최종 성능·안전성이 확보되는 설치형 분야)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제품의 설계·생산·운영 과정이 복합화되고 있어, 제조공장 중심의 획일적인 인증심사 체계만으로는 다양한 산업 현장의 인증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증기관이 제품 및 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증심사 유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심의회가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KS 인증 취득 대상을 제조하는 자 외에 설계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까지 확대하여 제조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설계기업 등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심사 유형에 따라 정기심사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KS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KS 인증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함에 따라 첨단산업 및 융복합 산업 분야의 인증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산업표준심의회가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심사 유형의 설정 및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증 유형별 특

성에 따라 정기심사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인증심사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기준이 하위법령 또는 운영기준에 위임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인증 유형의 구분 기준과 적용 범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형별 적용 대상 및 심사기준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의 구체화 방안
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특히, 인증심사 유형에 따라 정기심사를 면제하거나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신뢰성과 사후관리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형별 위험도, 품질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인증 취득 대상을 설계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제조자와 설계·설치·운영 주체 간 역할이 분리될 수 있고 인증 유지관리 책임이나 인증표시 사용 등에 관한 책임 귀속 관계가 불
분명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하위법령 또는 운영기준을 정비하
는 과정에서 책임 주체 및 책임 범위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새로운 인증심사 유형을 심의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심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제품인증 취득 대상을 제조·설계·설치·운영하는 자 등으로 확대하여 인증심사 유형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한 조사·제재체계 마련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5조제3항·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확인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확인조사에 대하여 조사계획 통지, 증표 제시 및 출입문서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안 제20조),

인증심사원의 업무 범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안 제18조),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원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확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	제18조(인증심사원) ① ----- ----- -----

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4.·5. (생략)

④ (생략)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② (생략)

<신설>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사,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제2

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20

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4.·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

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 사업장, 사무소 또는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

⑥ -----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1. -----시판품조사 .
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u>른 조사</u>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생략)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u>시판품조사</u>·<u>현장조사</u>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u>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u> 2. ~ 4. (생략) ② (생략)	<u>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u>----- ----- 2.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 -----. 1. -----<u>시판품조사</u>·<u>현장조사</u>,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u>조사</u>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u>확인조사</u>-----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20조4)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 중인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또는 인증받은 자의 공장·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41조⁵⁾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제20조제2항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44조⁶⁾는 해당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KS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KS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선량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증을 받지 않은 자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조사·단속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허위 KS 인증표시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권한과 제재수단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5) 「산업표준화법」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6) 「산업표준화법」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이에 개정안은 허위의 KS 인증표시에 대한 확인조사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판품조사·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확인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확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한 조사·제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고 인증심사원이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확인조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및 과태료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조사 업무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허위 KS 인증표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및 공정한 인증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확인조사는 허위 KS 인증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서 기존의 시판품조사·현장조사와 달리 위법행위 적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사권 행사 범위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보다 신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정안은 확인조사에 대해서도 조사계획 사전통지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긴급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통지 없이 현장 출입 및 서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하위법령 또는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 확인조사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 및 사전통지 예외 적용 기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확인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신고·제보 처리, 현장 출입조사 및 사후조치 등의 업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조사 인력 및 운영체제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증심사원의 전문성·인력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7
